##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47

발의연월일: 2020. 6. 24.

발 의 자:정춘숙·강병원·유동수

송옥주·김윤덕·강훈식

권인숙・박 정・권칠승

이용빈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1조는 사용자의 근로자 명부 작성 의무를 규정하면서 근로자 명부에 작성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근로자명부에 작성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 제21조는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의 작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함.

이에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고자 함(안 제41조제1항).

법률 제 호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	
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	
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u>&lt;단서 신설&gt;</u>	<u>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u>
	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
	<u>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u>
	<u>있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